

V - 9	제 목	누전차단기(3상)	
회신일자	2003년 2월 18일	회신방법	산자부 사이버민원실
의 요 지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3상 부하에 대하여도 3상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설치 단가가 엄청 높아지고 관리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설치 단가가 높아진다면 누전 차단기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3상에 대한 조작전원을 기존에는 3상 3선의 전원과 한선의 중성성만으로도 가능하였으나, 의무적으로 바뀐 기준에 따르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조작용 전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개의 설비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동력용 모터를 사용하는 공장 등은 너무 무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물론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지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 공장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면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외 규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는지요?			
신 내 용			
답변)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금속 제외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위험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생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압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경우로서 동기준 제4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때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 등)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